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문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47
----------	------

발의연월일 : 2012. 9. 12.

발 의 자 : 정문헌 · 김정록 · 손인춘
한기호 · 김진태 · 김기선
염동열 · 김동완 · 박성호
황진하 · 정희수 · 김재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통일부는 올해 7월 30일 ‘남북이산가족 교류촉진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이산가족 사후 교류 추진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유전자를 보관하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임.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사자유해의 신원과 유가족 확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이산가족에 대해서도 유전자 검사 및 보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유전자 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u>제8조의2(유전자 검사) ① 통일부장관은 남북 이산가족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을 위하여 남북 이산가족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u></p> <p><u>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전자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전자 검사결과 등 관련 자료를 보관·유지하여야 한다.</u></p> <p><u>③ 제1항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실시 및 신청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p>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남북 이산가족의 신원 및 유가족 확인을 위해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이를 보관·유지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안 제8조의2).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중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함.

3. 미첨부 사유

- 유전자 검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해서 사업을 진행하므로 현재로서는 희망자를 파악할 수 없어 정확한 예산액을 산출하기 어려움.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정문헌의원실 이종학 보좌관
연락처	788-2815